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845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지정기부사업 모금액 반영으로 기금 수입계획이 변경되고, 온기창고 ‘다채로운’ 프로젝트 사업,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 사업 등 기금 사업 도입으로 기금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년도(2024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 상 예치금 회수금액이 598백만원에서 565백만원으로 33백만원 감소하였고, '24년 최종 모금액 및 지정기부사업 모금 목표액 50백만원을 반영하여 기부금 수입 목표를 338백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나.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민간위탁금을 신설하고, 사무관리비에 기금사업비를 반영함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상 '정책사업' 금액이 기존 142백만원에서 329백만원으로 증가하여 132.1% 변경되었고, 예치금 금액이 827백만원에서 582백만원으로 245백만원 감소하였음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내용
〔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당 초 (A)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B)	증 감 (C=B-A)	증감률 (D=C/A)
합 계		979,998	921,244	△58,754	△6.0%
세외수입		381,490	355,591	△25,899	△6.8%
	경상적세외수입	18,490	17,856	△634	△3.4%
	이자수입	18,490	17,856	△634	△3.4%
	공공예금이자수입	18,490	17,856	△634	△3.4%
임시적 세외수입		363,000	337,735	△25,265	△7.0%
	기부금수입	363,000	337,735	△25,265	△7.0%
	기부금수입	363,000	337,735	△25,265	△7.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98,508	565,653	△32,855	△5.5%
	보전수입등	598,508	565,653	△32,855	△5.5%
	예치금회수	598,508	565,653	△32,855	△5.5%
	예치금회수	598,508	565,653	△32,855	△5.5%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B)	증 감 (C=B-A)	증감률 (D=C/A)
합 계		979,998	921,244	△58,754	△6.0%
효율적 재정운영		141,900	329,321	187,421	132.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41,900	329,321	187,421	132.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41,900	329,321	187,421	132.1%
	사무관리비 ○ 홍보비 등 33,000 ○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 95,000	33,000	128,000	95,000	287.9%
	기타보상금	108,900	101,321	△7,579	△7.0%
	민간위탁금 ○ 온기창고‘다채로움’프로젝트 100,000	-	100,000	100,000	신설
재무활동		827,098	581,923	△245,175	△29.6%
	보전지출	827,098	581,923	△245,175	△29.6%
	여유자금 예치	827,098	581,923	△245,175	△29.6%
	일반예치금	827,098	581,923	△245,175	△29.6%
행정운영경비		11,000	10,000	△1,000	△9.1%
	기본경비	11,000	10,000	△1,000	△9.1%
	기금관리비	11,000	10,000	△1,000	△9.1%
	사무관리비	11,000	10,000	△1,000	△9.1%

Ⅲ. 검토의견¹⁾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를 △3,200만원 감조정하고, 기부금 모금 목표액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입**도 △2,500만원 감조정하는 등 수입계획을 변경(△5,800만원)²⁾하고,

- 지출계획은 정책사업중 ①**효율적 재정운영**에 1억 8,700만원을 증액하고, ②**재무활동**은 △2억 4,500만원을 감액하며 ③**행정운영경비**도 △100만원 감액하여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³⁾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은 3개 정책사업의 지출계획액을 증·감요청한 것으로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계획은 ①'24년도 결산결과, 기부금 목표 모금액이 부족달성되어 '25년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 수입을 당초(5억 9,800만원)보다 △3,200만원 감액한 5억 6,5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 ②'25년도 목표 모금액 즉, **기부금수입** 예상액을 현실화하고자⁴⁾ 당초(3억 6,300만원)보다 △2,500만원 감액한 3억 3,700만원으로 수입계획

1) ■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2) 예치금회수 △3,200만원, 기부금수입 △2,500만원, 이자수입 △63만 4,000원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24회계연도 기부금수입 실제수납액(2억 8,700만원), 지정기부사업 목표액(5,000만원)

을 변경하고, ③예치금과 기부금수입 감소추이를 반영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도 당초보다 △63만원 감액한 1,7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나,

-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를 감액조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2024년도 예치금 적립 예상액을 과다 예측한 것으로 '24년도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치금을 현행화하지 않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장부상 허수가 될수 밖에 없는 이른바 '실행불가능한 액수'를 **예치금 회수**로 선(先) 편성한 결과로 사료됨
- 동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에서 발생된 부족분(△3,200만원)을 감조정하지 않는다면 기금의 수입계획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지출계획에도 부족액만큼 허수가 연동될 수 밖에 없어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의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운용부서가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는 매년 11월 초 예치금의 실제 통장잔고가 아닌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을 다음연도 수입계획에 선(先) 편성하고, 결산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결손액을 반복적으로 감액 경정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의 경우에는 ①정책사업인 **효율적 재정운영** 중 (가)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나) **온기창고 '다채로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당초 정책사업 지출금액(1억 4,100만원)보다 132.1%, 1억 8,700만원이 증가(3억 2,900만원)되어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다른 정책사업인 ②**재무활동**의 경우, **여유자금 예치**는 당초 지출계획(8억 2,7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당초 정책사업 지출금액보다 △29.6% 감액되어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정책사업인 ③**행정운영경비**의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1,100만원)보다 △10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당초 정책사업 지출금액보다 △9.1%(△100만원) 변동되는 것이기에 의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표 3-1〉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 성 목				당 초 (A)	기금운용계획 변 경 (안) (B)	증 감 (C = B - A)	증 감 륜 (D = C / A)
합 계				979,998	921,244	△58,754	△6.0
효 율 적 재 정 운 영				141,900	329,321	187,421	132.1
고 향 사 랑 기 부 제 운 영				141,900	329,321	187,421	132.1
고 향 사 랑 기 부 제 운 영				141,900	329,321	187,421	132.1
사 무 관 리 비 ○ 홍보비 등 33,000 ① 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 95,000(신규)				33,000	128,000	95,000	287.9
기 타 보 상 금				108,900	101,321	△7,579	△7.0
민 간 위 탁 금 ② 온기창고 '다채로움' 프로젝트 100,000(신규)				-	100,000	100,000	순증
재 무 활 동				827,098	581,923	△245,175	△29.6
보 전 지 출				827,098	581,923	△245,175	△29.6
여 유 자 금 예 치				827,098	581,923	△245,175	△29.6
일 반 예 치 금				827,098	581,923	△245,175	△29.6
행 정 운 영 경 비				11,000	10,000	△1,000	△9.1
기 본 경 비				11,000	10,000	△1,000	△9.1
기 금 관 리 비				11,000	10,000	△1,000	△9.1
사 무 관 리 비				11,000	10,000	△1,000	△9.1

※ 자료근거 : ①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
②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5. 5.26) 재구성

○ 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할 경우,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사용목적⁵⁾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인 바,

-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 기금의 사용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서 지출계획 변경안 중 ①**지역상생 중장년층 창업지원**(9,500만원)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내용이 동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적정 사업인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조례로 정하여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⁶⁾, 동 사업은 (중도)퇴직·창업자가 지방특산물을 활용한 창업 추진 시, 창업교육 및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지역자원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초기창업(1년 이하) 대출 연계,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에⁷⁾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이행한 이후⁸⁾ 지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5)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6)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6501 (‘25. 5.21),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7) 중소벤처기업부, 「2024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안내서」

Ⅱ 사전협의 대상

1. 중소기업지원사업 정의

- ▷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재정 사업
- 지원목적에 따라 금융, 기술, 창업, 인력 등으로 분류
 - (창업)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화, 창업공간 지원 등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교육, 훈련, 사업화, 경진대회, 투자유치 등 (재)창업 지원
 - 메이커스페이스, 창업공간지원, 엑셀러레이터 육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후략)

8)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자 불과 며칠 전인 6월 17일에서야 중소기업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고, 당초 방침에는 명시하지 않은 단년도 시범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6월 17일 당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사전 협의 제외 대상이라는 협의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동 사업은 중소기업 사전협의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 하나, 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50플러스 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사료되지 않아 향후 사업의 계속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출계획 변경안 중 ②**온기창고 ‘다채로움’ 프로젝트**(1억원)는 동 기금의 지출계획에 민간위탁금을 신규로 지출계획한 바, 기존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복지실 소관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중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5개 쪽방 상담소 운영**에 동 기금으로 추진하려는 민간위탁금을 교부하려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9)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하되 일반회계·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은 복지실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기획조정실에서도 기금을 통해 동일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를 통해¹⁰⁾, 1개의 정책사업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p.281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
-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은 단일 실, 과 조직에서만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개의 단위 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목적이 동일하다면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동 지출계획과 같이 지출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훈령을 벗어난 지출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 기금이 다른 기금과 달리 기부금 수입을 통해 조성되고, 동 조례 제7조에 명시된 기금의 사용목적도¹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¹²⁾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출계획한 사업 내용이

1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① ~ ② 생략
-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4. 7), pp.76~79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 단위사업 내 동일사업에 일반/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

사회복지과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정책사업	잘 못 된 사 례		잘 된 사 례	
	단 위 사 업	회계	단 위 사 업	회계
주민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사업	일반+기타특별	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일반
			2.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
	2.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3.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 주머니(회계)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단위사업들의 정책 목적이 동일하다면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

11)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의 사용목적)

-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내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¹³⁾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때 기금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사업별 설명서를 누락한다면 사업에 대한 신설,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의결을 요청하는 행태인 것은 물론 지출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변경된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1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